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018. 12. 22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박영민



INDEX

1. 들어가는 말
2. 퇴직연금 현황
3. 기금형 퇴직연금
4. 해외사례
5. 맺음말
6. 참고 문헌





1. 들어가는 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 수익률 비교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 균
국민연금	10.37	2.31	6.99	4.19	5.25	4.57	4.69	7.28	5.71
공무원연금	8.24	1.39	3.06	3.28	3.35	3.79	3.72	7.05	4.21
사학연금	10.77	1.66	6.62	3.99	2.63	3.83	3.91	9.19	5.28
퇴직연금	5.03	4.09	4.65	3.73	3.04	2.15	1.58	1.88	3.26
예금	3.86	4.15	3.70	2.89	2.54	1.81	1.56	1.67	2.77
KOSPI	21.88	-10.98	9.38	0.72	-4.76	2.39	3.32	21.76	4.90

자료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 고객확보를 위한 고금리 경쟁 시기('12년 이전)를 제외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



2. 퇴직연금 현황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 및 추이

■ 가입자 현황 (‘16년 2분기말 기준)

- 퇴직연금 가입자는 619만명 (전분기 대비 12만명 ↑)
- 퇴직연금 가입률은 53.4% (전분기 대비 1.0%p ↑)

(단위 : 천명,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P 특례
근로자 수 (%)	6,187 (100)	3,622 (58.5)	2,486 (40.2)	79 (1.3)

※ 전체 상용근로자 : 1,157만명

■ 가입자 추이

- 전체 가입자 수 및 제도별(DB, DC)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

(단위 : 천명, %)

유형/분기	'15/2	'15/3	'15/4	'16/1	'16/2
전체(증감률)	5,608(0.8)	5,681(1.3)	5,904(3.9)	6,064(2.7)	6,187(2.0)
DB	3,320(0.3)	3,358(1.1)	3,436(2.3)	3,555(3.3)	3,622(1.9)
DC	2,204(1.7)	2,240(1.6)	2,385(6.5)	2,427(1.7)	2,486(2.4)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

■ 도입 사업체 현황 (‘16년 2분기말 기준)

- 전체 사업체 도입률은 17.0% (전분기 대비 0.2%p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도입률은 89.7% (전분기 대비 3.0%p ↑)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도입률은 15.4% (전분기 대비 0.1%p ↑)

(단위 : 개소, %)

사업장 규모	DB 단독	DB·DC 병행	DC 단독	기업형RP	도입사업장 합계	전체 사업장수	도입비율
10인미만	46,721	2,522	110,315	32,263	191,821	1,586,579	12.1
10 ~ 29인	27,594	2,939	53,357		83,890	202,049	41.5
30인미만	74,315	5,461	163,672	32,263	275,711	1,788,628	15.4
30 ~ 99인	12,039	1,983	16,542		30,564	59,970	51.0
100 ~ 299인	3,456	1,172	3,671		8,299	12,059	68.8
300 ~ 499인	528	333	397	-	1,258	1,533	82.1
500인이상	483	642	232		1,357	1,382	98.2
300인이상	1,011	975	629	-	2,615	2,915	89.7
합 계	90,821	9,591	184,514	32,263	317,189	1,863,572	17.0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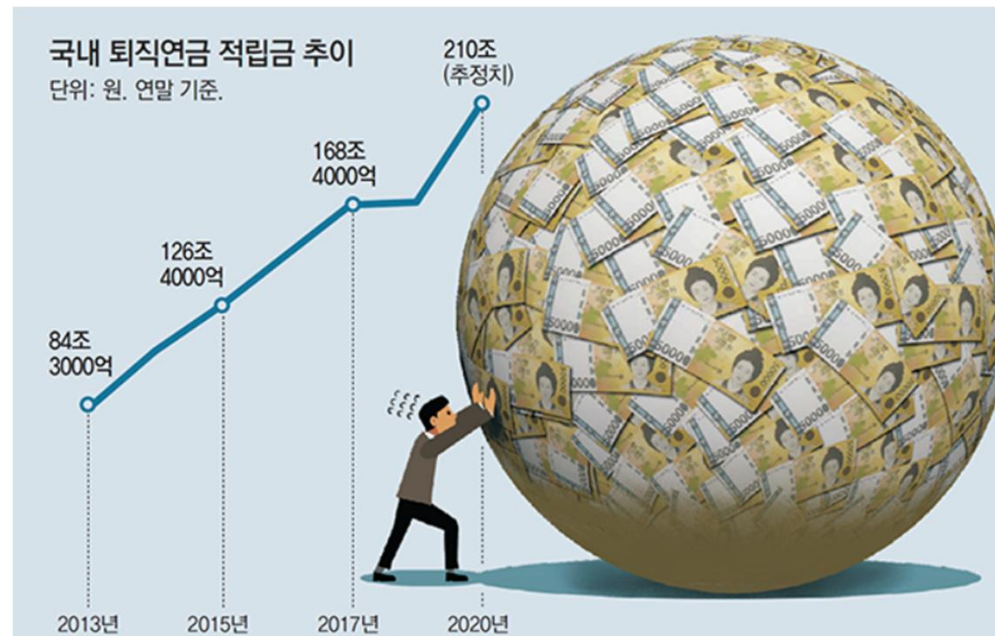
적립금 현황 및 추이

■ 적립금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DB	DC	IRP	합계
'16년말(비중)	99.6(67.8)	34.2(23.3)	13.2(9.0)	147.0(100.0)
'17년말(비중)	110.9(65.9)	42.3(25.1)	15.3(9.1)	168.4(100.0)
증감액	11.3	8.1	2.1	21.4
증감률	11.3	23.7	15.9	14.6

■ 적립금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3. 기금형 퇴직연금

계약형 vs 기금형 퇴직연금

■ 계약형

-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위탁하는 형태
- 경영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 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하여 일임
-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 기금형

-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
- 경영자와 근로자 및 외부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일반화된 제도

퇴직연금 제도 비교

■ 계약형 vs 기금형 비교

	계 약 형	기 금 형
연금 관리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	독립법인 형태의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용 외부 위탁(관리와 운용 분리)
연금관련 의사결정	경영자 주도	위원회(사용자, 근로자 모두 참여)
운용감독대상	금융기관	개별 퇴직연금기금
근로자 참여	DC정도만 근로자 직접투자	노조 중심 적극 참여
구 조	<pre> graph TD User[사용자] -- "적립금납입" --> FinCo[금융회사] FinCo -- "연금계약제출" --> User User <--> "연금계약" Employee[근로자] FinCo -- "퇴직금(연금, 일시금) 지급" --> Employee </pre>	<pre> graph TD User[사용자] <--> "연금 계약" FinFund[퇴직연금기금
(운영위원회)] Employee[근로자] <--> "신탁 계약" FinFund FinFund -- "(필요시)" --> FinCo1[금융회사] FinFund -- "(필요시)" --> FinCo2[금융회사] </pre>

현행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문제점 - 기금형 도입 배경

- **DC : 물가 상승률 및 퇴직 후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지 않은 운용**
 - 확정금리형과 같은 저위험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 : 낮은 소득대체율 예상
 - 주식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자산 중심의 운용 : 시장 상황에 따라 큰 손실
⇒ 각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 및 자산·부채 상황을 고려한 운용 필요
- **DB : 미래 부담금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운용**
 - 이자율 하락에 따른 부채(퇴직연금) 현재가치의 증가
 - 임금 상승률에 따른 미래 부담금의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수익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미래 증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LM(Asset Liability Matching) 방식의 적립금 운용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 문제**
 - 근로자와 경영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임
 - 대리인 문제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경영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고려

기금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 가능 ② 회사와 독립되어 있어 수급권 보장 ③ 수탁자가 금융관련 전문가로 선정되므로 운용관련 전문성 증가 ④ 전문가들을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산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등) ②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축소하는 곳이 증가할 수 있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예상 효과

-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 확대
- 취약한 근로자의 이익 보호장치 확충
- 대리인 문제 해소
- 퇴직연금 관리 및 운용의 전문성 확보
- 퇴직연금 운용의 편중현상 해소 및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단위 : %)

권역	구분	전체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5년	2.39	2.31	2.67	2.27
	9년	3.29	3.20	3.53	3.18
원리금보장	5년	2.36	2.29	2.62	2.20
	9년	3.18	3.15	3.27	3.08
실적배당형	5년	2.93	3.01	2.98	2.74
	9년	4.74	5.53	4.57	4.28

자료 : 금융감독원

※ '17년 기준 과거 5년, 9년 동안의 총비용 차감후 연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시 고려 사항

- **수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전문적인 수탁 인력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관리 감독에 필수적인 연금계리사 등 사회적 인프라 확보 필요

- **운용위원회의 효과적 구성 방법**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전문가를 어떤 형태로 참여시킬지에 대한 방법 논의

- **기금운영위원회 감독 방안**

기금형이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기금형 도입의 부작용 해소**

계약형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의 전면적 도입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초기에는 시범적인 도입과 실시가 필요할 것

[참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

- '14.8월 : 정부합동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발표(기금형 도입)
- '14.8월 ~ '16.7월 : 기금형제도 도입방안 검토(연구용역, 노·사 의견 수렴 등)
- '16.8월 ~ '16.10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16.9월 ~ '17.6월 : 규제 심사
- '17.6월 ~ '18.3월 : 법제 심사
- '18.4.10 : 국무회의 통과
- 현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4. 해외사례

주요국 기금형 퇴직연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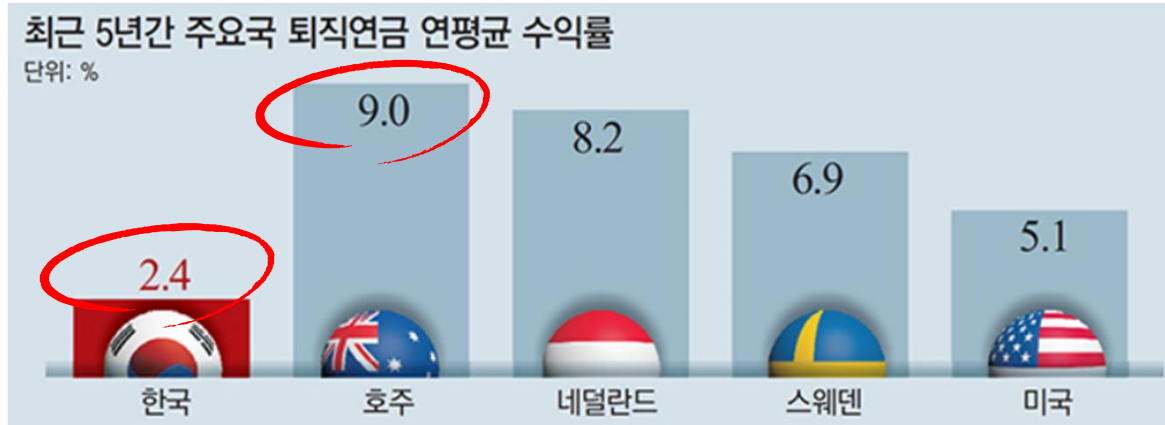
국가	현 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 이후 주로 DC형 및 IRA(개인퇴직계좌) 위주로 발달하면서 위험자산에 적절하게 투자하는 "생애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성장 - 대표적인 사례인 401k 플랜은 DC형으로 주로 주식, 채권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의 경우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을 통한 다층적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며, 필요시 적립률 회복 계획 등을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 - DC형의 경우 수탁자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가능 펀드의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시 default fund 등을 제시할 수 있음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 도입된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이 활성화 - '05년부터 기금선택제가 실시되어 근로자는 5개 기금(기업형, 산업형, 공적, 소매형, 소형)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5개 기금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가짐

주요국 기금형 퇴직연금 사례

국가	현 황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조적 성격으로 가입의무는 없지만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며, 평균 가입률이 95%를 상회 - 산업별 퇴직연금이 활발하여 다수의 기업이 산업별 퇴직연금에 가입하며, 산업별 퇴직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사회 산하에 다양한 하부위원회를 보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은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하고, DC형은 계약형만 존재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DB도 계약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계약형에서도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호 견제 및 감시감독 기능에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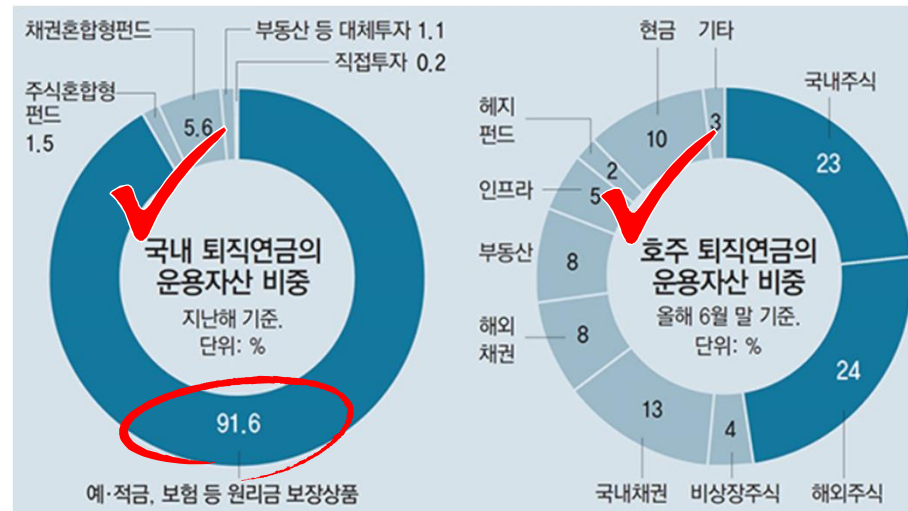
주요국 퇴직연금 수익률 및 운용 현황

■ 최근 5년간 수익률



자료 : 금융감독원, OECD

■ 운용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ASFA



5. 맺음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 **기본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최소 연 4.6%의 수익률 필요**
 - 국민연금 월 96만원 + 퇴직연금 월 69만원¹ = 월 평균 165만원²
 - 주1) 29세 입사, 60세 은퇴, 83세 사망시, 금융감독원
 - 주2) '15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 **'17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에 불과**
 -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연간 3%(최소요구수익률 - 실질수익률)의 차이는 장기로 갈수록 큰 영향**
 - 근로자 : 임금이 동일한 근로자가 연 5% 및 연 2%의 퇴직연금 수익률 기록시
 - ⇒ 은퇴시점 적립금의 차이는 **56%**
 - 기업 : DB형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 매년 3%의 연금부채 증가³
 - 주3) '17년 기준 KOSPI 200 기업의 평균 임금상승율 4.8%, 퇴직연금 수익률 1.88%



6. 참고 문헌

참고 문헌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의의와 도입방향, 2018, 남재우
-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금융감독원
-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김병덕
-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 방안, 2015, 한국채권연구원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와 도입 효과 , 2015, 황원경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2012, 신성환



감사합니다 !!!